

보도 일시	2022. 12. 22.(목) 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12. 22.(목)
담당 부서 <총괄>	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 홍기성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 김석재 (044-201-2555)

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이하 중수본)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(약 14,000마리 사육)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.

- * 가금농장 발생('22.10.17.~): 48건(종오리 8건, 종계 3건, 육용오리 19건, 육계 2건, 산란계 13건, 메추리 1건, 관상조류 1건, 토종닭 1건)
- * (검사 중) 경북 성주군 산란계 농장^{49차(잠정)}, 경남 하동군 육용오리 농장^{50차(잠정)},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^{51차(잠정)}

해당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를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,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하 가금에 대한 검사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, 검사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.

- *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, **고병원성 여부는 약 1~3일 소요 예상**

중수본은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, 살처분,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,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22일(목) 13시부터 12월 23일(금) 13시까지 24시간 동안, “① 전남 나주시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(사료공장·도축장 등)·축산차량, ② 농업회사법인 (주)다솔(발생농장 계열사) 계열 전국 가금류 사육농장 및 관련 시설(사료공장·도축장 등)·축산차량”에 대해 발령된다.

*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·축산시설·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

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·시설·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.

*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

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,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(고정식 소독시설 + 고압분무 소독), 출입자(농장주·종사자 포함) 방역복·덧신 착용 및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,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.

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, 산란율 저하,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.

불입 농장 4단계 소독 요령

*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☎ 1588-9060 / 4060

담당 부서 <총괄>	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	홍기성	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	김석재	(044-201-2555)
	환경부 야생동물질병관리팀	책임자	과 장	남형용	(044-201-7491)
		담당자	사무관	강민주	(044-201-7502)

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예방 「농장 4단계 소독」 요령

1단계

농장 출입시 소독 철저

농장진입로 폭 2m이상
생석회 충분히 도포

출입구 고정식+ 고압분무기
2단계소독



- 1주일 간격 반복 도포
- 비-눈 내린 후 즉시 재도포
- 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 추가 소독

2단계

농장 내부 관리 철저

농장 내부(축사 밖)
매일 청소·소독

부출입구·뒷문 폐쇄



- ※ 소독약은 용법용량 권장 희석배수 준수
- 농장 내 아생조수류 유인 요소 (사료·폐사축왕겨) 매일 청소소독
- 전실 미설치 축사 뒷문(쪽문) 폐쇄
- 방역·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 부출입구 폐쇄

3단계

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·손 소독

축사 출입시 전용장화 갈아신기
손소독(위생장갑 착용시 포함) 실시



※ 신발소독조 소독약은 2~3일 간격 교체

- 전실에 전용장화·손소독제 비치·전실 매일 소독
- 신발(장화)에 붙은 유기물 제거 후 신발소독조 사용
- 장화 갈아신기용 구조물 또는 발판 설치

4단계

축사 내부 매일 소독

축사 출입구, 내부 통로, 환기구 등 집중 소독
정기적인 설치류 제거 및 안개분무 소독



- 사람·가축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사 금지
- 가축과 직접 접촉하는 물품소독 철저 및 외부 반출 금지

농장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
가축질병 피해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.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축산검역본부



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